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6 차 국 방 위 원 회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사자·순직자 등 추서진급자의 진급된 계급에 따른 예우〉

■ 한기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091호)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

III . 검토의견	2
------------------	---

※ 참고자료

1. 최근 10년간 추서 진급 현황	8
---------------------------	---

2. 개정안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월액 변동	9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기호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2.
3. 회부연월일 : 2024. 8.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와 전투,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한 적절한 예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전사자·순직자 등의 추서 진급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진급된 사람의 급여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전사자와 순직자로 추서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를 추서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이하 “기준소득월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한다. <단서 신설>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 ----- ----- ----- ----- - <u>다만, 군인이 사망한 후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급된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u>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현재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군인사법」 제30조제1항¹⁾의 규정에 따라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도달하지 않거나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도 진급을 시킬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

전사자 및 순직자의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및 사망조위금은 「군인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진급 이전의 계급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및 사망조위금은 「군인재해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일은 전사·순직일의 전일(前日)인 반면, 추서진급은 전사·순직일 기준으로 진급되므로 관련 급여는 현재 진급 전의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임.

1) 「군인사법」 제30조(전사자·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①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와 제29조(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장성급 장교로 진급시킬 때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군인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복무하고 얻은 소득 중 **과세소득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포함하는 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중략)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생략)

「군인재해보상법」 및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

법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급여의 산정**은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시행령 제11조(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 ② (중략) “**기준소득월액**” 및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산정 기준일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퇴직한 날의 전날**로 본다.

□ 따라서 개정안은 현재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헌신한 전사자 및 순직자로서 추서 진급된 사람의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사망조위금이 진급 전 계급에 맞추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을 문제점으로 인식하여 전사자와 순직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급여 및 예우를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가가 최선을 다하여 전사자·순직자 유족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함으로써 그들의 명예심 제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타당성은 크다고 할 것임.

□ 한편, 개정안 부칙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해 旣 전사·순직자의 유족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국방부는 旣 전사·순직자의 유족에도 소급 적용하여 각종 급여 및 예우를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하여 지급하자는 입장임.

현 행	개 정 안	국방부 수정의견
<신 설>	<u>부 칙</u>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u> <u>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u> <u>시행한다.</u> <u>제2조(기준소득월액 산정에</u> <u>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u> <u>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u> <u>시행일 이후에 사망한 사</u> <u>람부터 적용한다.</u>	<u>부 칙</u> <u>제1조(시행일) -----</u> <u>-----</u> <u>-----.</u> <u>제2조(기준소득월액 산정에</u> <u>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1</u> <u>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u> <u>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u> <u>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u> <u>제35조의 순직유족연금의</u> <u>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u> <u>에게도 적용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u> <u>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u> <u>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u> <u>일부터 적용한다.</u>

□ 국방부의 既 전사·순직자의 유족에도 소급 적용하여 순직유족 연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함. 개정안의 경우 전사·순직 시기와 상관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기존 유가족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이 높고, 시행일 이후의 전사·순직자의 유족한테만 지급하면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면 수정의견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은 군인연금기금의 재해보상급여

(4331-303) 사업에 의해 지급하는 바, 군인연금기금은 국가보전
 금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²⁾ 개정안에 따른 추가 지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추가로 수반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로, 동 개정안에 따른 신규 대상자에 대한 순직유족연금
 (일시금) 및 사망조위금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13억 2,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향후 5년간 순직유족연금 및 사망조위금 추가재정소요 전망]

(단위 : 명, 천원)

구 분 연 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소급 대상	유족 연금	대상인원	591	591	591	591	591	-
		추가소요	1,198,540	1,241,688	1,286,389	1,332,699	1,380,676	6,439,992
신규 발생	유족 연금	대상인원	5.6	11.2	16.8	22.4	28.0	-
		추가소요	9,538	19,657	31,323	44,021	57,825	162,364
	사망 조위금	대상인원	5.6	5.6	5.6	5.6	5.6	-
		추가소요	2,815	2,886	2,958	3,032	3,107	14,798
합 계		추가소요	1,210,893	1,264,231	1,320,669	1,379,752	1,441,608	6,617,153

- 연평균 추서진급자가 5.6명 신규 발생함을 가정함 (최근 10년간 56명 발생 고려)

- 물가상승률 3.6%, 처우개선률 2.5% 가정

- 재정추계 시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자는 없는 것으로 가정

□ 결론적으로, 개정안의 취지와 국방부의 수정의견인 기존 유가족
 에게도 지급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보임. 다만, 군인연금기금
 문제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2025년 기준 군인연금기금의 총 세입(안)은 4조 6,051억 6,6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전입금이 3조 7,020
 억 9,400만원, 연금기여금 세입은 7,749억 4,000만원인 반면, 퇴직급여 세출 예산안은 3조 9,088억 2,300만원
 에 달하여 기금이 고갈된 상황임.

□ 기획재정부는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일반공무원, 경찰, 소방 등 타 직역과의 형평성 측면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유관 법률 개정 논의도 일괄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³⁾.

□ 참고로,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953호,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105호,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의 심사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310

3) 「군인사법」은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진급을 포함한 임용, 복무, 교육훈련,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일반직공무원·경찰·소방공무원의 각종 급여 지급 규정체계와 유사하게 연금 및 각종 예우는 해당 개별법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즉, 유족급여는 「군인연금법」에,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 등은 「군인재해보상법」에, 그 밖에 보상금, 수당, 교육 및 취업지원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 참고자료

1. 최근 10년간 추서 진급 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하사→중사	1	3	1	1	1	2	2		1		12
중사→상사			1	1	3	2	1		2		10
상사→원사			1	2	2		1	1			7
원사→준위	1			1	1	1				1	5
소위→중위			2								2
중위→대위			1	2		2	1			2	8
대위→소령	1			2		1			1	1	6
소령→중령	1					1					2
중령→대령	2					1				1	4
합 계	6	3	6	9	7	10	5	1	4	5	56

자료 : 국방부제출

2. 개정안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월액 및 사망조위금 변동(최근 10년간
추서진급자 기준)

[순직유족연금월액 증가액]

직 급		인 원 (명)	개정시 연금월액 증가분	
순직 당시	특별승진 후		총 액(원)	1인당 평균액(원)
하사	중사	12	179,642	14,970
중사	상사	10	1,017,303	101,730
상사	원사	7	1,070,163	152,880
원사	준위	5	1,636,851	327,370
소위	중위	2	69,626	34,813
중위	대위	8	1,887,375	235,922
대위	소령	6	933,648	155,608
소령	중령	2	331,065	165,533
중령	대령	4	628,588	157,147
합 계		56	7,754,261	138,469

[사망조위금 증가액]

인 원 (명)	개정시 사망조위금 증가분	
	총 액(원)	1인당 평균액(원)
56	27,465,400	490,454

자료 : 국방부제출